

공학교육 전문프로그램 운영규정

(제정 2009. 12. 17.)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학칙」 제28조제3항 및 「공학교육 전문프로그램 운영규정」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26.>

[본조개정 2020.9.1.]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8.26.>

1. “전문프로그램”이란 본교가 공학사를 수여하는 각 학사단위(학부, 학과, 전공을 말한다. 이하 “학사단위”라 한다)에 (사)한국공학교육인증원이 공학교육에 대한 인증을 위하여 제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공학교육 전문프로그램을 말한다. <개정 2015.8.26.>
2. “일반프로그램”이란 전문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사단위에서 전문프로그램의 이수를 선택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하여 구성·설치하고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3. “전입생”이란 전문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사단위에 중도 진입하는 편입생, 전과(부)생, 복학생(전문프로그램 개시년도 이전 입학생을 말한다), 재입학생, 복수전공 이수학생 등을 말한다. <개정 2015.8.26.>

제3조(프로그램의 구분과 운영) ① 본교의 공학교육 프로그램은 전문프로그램과 일반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프로그램은 (사)한국공학교육인증원이 공학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제시하는 인증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구성·운영 되어야 하고, 학사단위별 전문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일반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칙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학칙시행세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8.26.>

제4조(전문프로그램의 이수신청 및 포기) ① 2007학년도 이후에 신입학 한 학생은 전문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사단위에 입학함으로써 전문프로그램 이수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② 전입생은 본인이 전문프로그램 이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전문프로그램 이수를 희망하지 않거나 중도에 이수를 포기하고자 하는 학생은 전문프로그램 이수를 포기할 수 있다. 다만, 2016학년도 이후 입학한 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한하여 이수를 포기할 수 있다. <개정 2015.8.26.>

1. 다전공자 <신설 2015.8.26.> <개정 2018.3.5.>
2. 편입생 및 전과생 <신설 2015.8.26.>
3. 외국인 유학생 <신설 2015.8.26.>
4. ROTC <신설 2015.8.26.>

④ 전문프로그램 이수를 포기한 자는 전문프로그램에 다시 참여 할 수 없으며, 일반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5조(교과구분) 전문프로그램에서 운영하는 교과목은 전문교양 교과목, 수학·기초과학·전산학 교과목(이하 “MSC” 라 한다), 전공 교과목 등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4. 4.23.>

제6조(이수기준 및 졸업요건) ① 전문프로그램 이수자는 제3조 제2항에 의한 이수기준에 따라 편성된 전문프로그램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여야 프로그램 이수를 인정한다.

② 전문프로그램 이수자가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학칙에서 정한 해당 학사단위의 졸업요건과 본 규정에서 정하는 전문프로그램 이수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제7조(전문프로그램 이수의 구별) ① 전문프로그램이 제공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자는 전문프로그램 이수자임을 표기하여 학위를 수여한다.

② 전문프로그램과 일반프로그램의 이수자를 구별하기 위해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제 증명서에 전공명과 함께 이를 구분하여 표기한다.

제8조(평가, 상담 및 관찰) ① 전문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각 학사단위는 프로그램 소속 학생들을 이해하고 지도하기 위하여 지도교수를 두고, 다양한 평가와 상담 및 관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문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각 학사단위는 소속 학생들에게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교과목 이수 및 학교생활 적응력 제고 등을 위하여 공학교육 전문프로그램 제도, 교육과정, 수강신청, 졸업 후 진로, 상담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 등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전문프로그램 이수자는 지도교수와 교육과정 이수, 수강신청, 진로 및 기타 학교생활 등에 관하여 상담하여야 한다.

제9조(공학교육전문프로그램위원회) ① 공학교육 전문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학교육전문프로그램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공학교육전문프로그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본교의 공학교육 전문프로그램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본 규정 및 시행세칙, 내규, 운영지침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10조(PD 및 학사단위별 전문프로그램운영위원회) ① 각 학사단위에 학사단위별 전문프로그램 운영을 총괄하는 PD(Program Director, 이하 “PD” 라 한다)를 둔다.

② 학사단위별 전문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학사단위별 전문프로그램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학사단위별 전문프로그램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사단위별 전문프로그램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각 학사단위별 내규 및 운영지침의 제·개정 및 폐지에 대한 사항
3. 기타 필요한 사항

④ 학사단위별로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보칙)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학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본교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에 따른다. <개정 2015.8.26.>

②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 및 학사단위별 내규로 정한다. <개정 2015.8.26.>

부 칙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09년 12월 17일 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본 규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본 규정 제정 이전에 시행한 공학교육 전문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4월 23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8월 26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3월 5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